

의안번호	
의 퇴 인	장종태 의원
회 답 일	2024. 6. 24.
추 계 번호	24C1047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2조(비용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(비용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비용의 범위 및 그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
 -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고, 일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·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현황

구 분	지원 목적	2024년도 지원단가
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원	건립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·모니터링 등	개소당 1억원 ※ 계속 지원이 아닌 1회 지원이며, 2024년 예산에 1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반영 ※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00% 충당
공공어린이재활병원· 센터 운영지원	지정 병원·센터의 인건비 지원	(지정 병원 2개소) 개소당 9억 3,750만원 (지정 센터 1개소) 개소당 3억원 ※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80%, 지방비로 80% 충당

자료: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행법 제2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·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